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든 도서 할인율 15% 이내로 제한 개정법률 공포...6개월 후인 11월 시행

최재천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지난 4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개정안은 5월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고, 6개월 경과 후인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로 확대된다. 또한 도서 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되며,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특히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변경해 변경된 정가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도서정가제는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적용된다.

신간 할인 정가의 10%로 제한

최재천 의원이 발의(2013. 1. 9.)한 개정안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수정안)'은 할인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당초 개정안은 ▲최대 19%까지인 현행 신간 도서 할인율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신간·구간 구분을 없애 현행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 모두 포함하며 ▲도서관 판매 간행물과 실용도서·학습참고서에도 정가제를 적

용하는 것을 담고 있었다.

특히 할인율에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온·오프라인 서점 간의 이견이 팽팽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의 중재를 통해 출판계·유통업계·소비자단체가 지난 2월 25일 모여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을 위한 협약'을 맺고 합의한 바 있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10% 이내에서의 직간접 할인을 허용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15% 이내로 완화했다.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을 위한 협약'의 주요 골자는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모든 경제적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만 허용 ▲실용서와 학습참고서(초등학생용)의 도서정가제 적용 ▲도서관 구매 간행물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구간 도서의 도서정가제 적용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와 할인율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이다.

